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,

가. [별지]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65,645,544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9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